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

(우)404-14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1로 55, 3층 /전화:(032)565-6343/전송:(032)565-6376

문서번호 : 한들 20171107 - 01

시행일자 : 2017. 11. 07.

수 신 :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
참 조 :

선 결			지 시		
접 수	일자 시간 번호	. . :	결 재 · 공 람		
	처리과				
	담당자				

제 목 :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(안) 제공람 통보의 건

1. 한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195호. 2017.08.21.)하고, 「도시개발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공람을 실시한 후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재 공람을 실시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내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
- 면 적 : 567,567.0㎡
- 사업시행방식 : 환지방식
- 사업시행자 :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

나. 공람 : 별첨 공고문 참조

다. 자세한 사항은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: 1. 환지계획(안) 제공람 공고문 1부
2. 환지계획(안) 제공람 조서 1부 끝.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

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(안) 재공람 공고

1. 우리 조합에서 시행하는 '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'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19조에 따라 「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195호, 2017. 8. 21)」 하고, 「도시개발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공람을 실시한 후 토지 소유자등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재공람을 실시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내 공람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(직접 또는 우편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, 주소 불명 및 부재·미수령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
--- 다 음 ---

1. 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의 명칭 :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(환지방식)
- 나. 사업의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-3번지 일원
- 다. 사업 시행자 :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
- 라. 사업의 면적 : 567,567㎡
- 마. 사업의 기간 : 2017. 8. 21(실시계획인가일) ~ 2021. 12. 31(환지처분일까지)

2. 재공람 서류 및 도면

- 가. 공람 의견서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토지의 환지계획변경(안) 조서 및 도면
- 나.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61조에서 정하는 조서 및 도면

3. 재공람기간 및 장소

- 가. 재공람기간 : 2017년 11월 8일 ~ 11월 24일까지(일요일 제외)
[공람시간 : 평일 10:00~17:00, 토요일 10:00~17:00]
- 나. 재공람장소 :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
[인천광역시 서구 한들1로 55, 3층(백석동) 전화 : 032-565-6343]
- 다. 재공람 서류 및 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
- 라. 재공람에 따른 의견서 제출 :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(직접 또는 우편)
※ 공람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1 월 7일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



환지계획(안) 재공람 순서 및 유의 사항

▶ 환지계획(안) 재공람 순서

1. 재공람 공고 통지문 수령(조합에서 등기 개별 통보)
2.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지참하여 조합방문(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증명서류 지참)
3. 공람자 명부 서명 또는 날인(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을 경우 공람 불가)
4. 환지계획(안) 열람 및 설명(우리 조합 사무실)
5. 이의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(의견서 양식은 조합사무실에 비치)

▶ 공람 시 유의사항

1. 환지계획도면은 공람용이므로 복사 및 사진촬영이 절대 불가함.
2. 의견서 제출 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서 반영 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함
3. 대리인이 공람 시 반드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후 공람 가능함
4. 공람 시 본인의 환지예정지만 공람 가능함(타인 토지 공람 불가)
5. 의견서 제출은 재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.
6. 공유로 된 토지는 대표자를 지정한 후 대표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, 공유자 전원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접수함.

※ 환지계획(안) 재공람 시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1월 07일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직인생략

공 램 위 임 장

수임자(대리인)

성명 :

주 민 번 호 :

주 소 :

전화 번호 :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(안) 재공람에 따른 공람권을 본인을 대신하여
상기 수입자(대리인)에게 위임합니다.

2017년 월 일

위임인(조합원)

성명 : (인감날인)

지 변 :

첨 부 : 1. 위임인(조합원) 인감증명서 1부
2. 위임인(조합원) 신분증 사본 1부 끝.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